# 19세기말 조선에서 감행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과 그 침략적본질

박사 부교수 오 순 희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일제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온갖 죄행들을 똑똑히 알려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김정일전집》 중보판 제21권 128~129폐지)

《운양》호사건의 도발, 《강화도조약》의 강압체결을 계기로 조선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깡그리 빼앗 아간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인류력사상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침략성과 호전성을 띠고 생겨난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와 거래를 가지는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재부 를 략탈하려고 책동하였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감행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에 대하여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사》(1868-1910)(사회과학출판사 1975년), 《미일제국주의의 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74년), 《일본의 조선침략사》(1868-1895)(사회과학출판사 주체103(2014)년)를 비롯한 여러 도서들에서 서술하였으나 19세기말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론문에서는 19세기말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금광리권강탈책동의 목적과 단계별특징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깡그리 빼앗아 저들의 경제적모순을 해결하려는 략탈적성격과 함께 보다 중요하게는 조선을 저들의 완 전한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적성격을 동반한 조선침략책동의 일환이라는것을 까밝히려고 한다.

# 2. 본 론

# 2. 1.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의 금광리권강탈을 통하여 추구한 목적

1875년에 감행한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한 일본반동정부는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과 그 부록 및 대일《무역규칙》을 강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침략자들은 부산항과 원산항을 강제개항하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깡 그리 략탈해가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부산과 원산 등 개항장들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본의 소상인, 고리대금업자,

실업자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오고 쌀 등 농산물들과 해산물, 직물과 약재, 귀금속 등이 닥치는대로 일본으로 흘러나갔다.

《강화도조약》강압체결이후 부산항이 개항된 때로부터 6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 항의 수출총액이 개항전에 비해볼 때 16.3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은 일본침략자들의 략 탈만행의 악랄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자연부원에서 많은 몫을 차지한것은 금, 은 을 비롯한 귀금속광물이였다.

그러면 일본침략자들이 19세기말에 들어와 우리 나라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을 통하여 추구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그 목적은 첫째로, 일본반동정부가 《강화도조약》강압체결이후 몇년어간에 조선에서 략탈해간 많은 량의 금이 자국내의 사회경제적모순을 완화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는것을 중시한데로부터 더 많은 금을 략탈하여 해외침략의 정치경제적지반을 마련하자는 데 있었다.

1868년 불철저하게나마 부르죠아혁명인 명치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1871년에 자국 내에서 금본위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하자원이 매우 빈약한데다가 경제의 미숙성 그리고 국내에 조성된 정치경 제적혼란 등으로 하여 일본은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경제적난관에 봉착하게 되 였다. 특히 금본위제를 실시하였으나 유미렬강들과의 무역과정에 수입초과로 일본이 보 유하고있던 금의 2/3가 해외로 흘러나간것으로 하여 커다란 재정적위기가 도래하였다.

일본경제는 명치유신후 1877년까지 심각한 위기에 빠져 금, 은 정화의 수출량이 4년 동안에 1 500만원을 넘어섰다.

결국 자국내에서 실시하였던 금본위제도는 정지되고말았다.

세계를 휩쓴 경제공황과 재정적위기로 자본주의발전에서 큰 지장을 받게 된 일본은 그 출로를 조선에 대한 경제적략탈에서 찾았다. 즉 일본반동정부는 당시 동방의 보물고라고도 할수 있는 조선에서 저들의 재정적위기를 모면하고 자본주의적발전을 다그치는데필요한 금을 비롯한 경제적재부를 충당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 일환으로 진행된것이 개항지들에서 일본상품의 대대적인 투입 및 무관세적용이였다.

1876년 2월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한 일본침략자들은 《자유무역》의 간판밑에 부산을 개항장으로 하여 20개월안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개 도 연해에서 편리한 두곳을 지정하여 개항한다는것을 조약에 쪼아박아넣었다. 이 조약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왕조의 태내에서 발전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경제적지배권을 실현할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외법권의 조항을 박아넣음으로써 우리 나라의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마음대로 침략과 략탈 그리고 온갖 만행을 감행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교활한 일본은 런이어 조선봉건정부에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일수호조규부록》과《조일무역규칙》을 강요함으로써 개항장들에서 일본화폐의 류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년간의 면세권을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공짜로 빼앗아갈수 있는 조건과 자본주의상품을 마음대로 조선시장에 침투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이와 반면에 조선봉건정부는 외래자본의 경제적침투를 막는 초소인 해관조차 틀어쥐지 못한것으로 하여 일본침략자들의 비법적침투에 간섭조차 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법적담보를 마련한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던것이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금을 대량적으로 략탈해가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 동하였다.

금, 은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는 19세기 전반기에 수백개소에서 금, 은광석을 캐내 고 사금도 채취하고있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금, 은은 중요한 무역상품의 하나로 되고있 었다.

일본침략자들은 개항직후에 부산에 일본 제1은행지점을 설치(1880년에는 원산에, 1882년에는 인천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일본인들에게 사금매수자금을 대출하게 하고 그들이 매수한 사금을 오사까조폐국에 발송하여 금화를 제조하게 하는 방 법과 조선인민들이 가지고있는 불상, 각종 장식품 및 묘지안의 금제품을 략탈 또는 도굴 하는 방법 그리고 금이 포함되여있는 엽전을 일본불환지폐 또는 사치품과 교환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본반동정부의 적극적인 뒤받침속에서 일본 제1은행은 《금매수자금특별대출》의 명 목으로 많은 자금을 무리자로 대부해주는 한편 제1은행권을 마구 찍어내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선에서 많은 량의 금을 사들임으로써 일본의 금보유량을 확대해나 갔다.

1881년부터 불과 4년동안에 일본침략자들이 인천. 원사 등 항구들을 통하여 일본으 로 실어간 금, 은덩어리의 금액은 무려 200여만원에 달하였다. 여기서 특히 놀라운것은 인천개항은 1883년인데 개항이전인 1881년부터 일본이 인천을 통하여 막대한 금, 은을 략탈해갔으며 또 인천에서의 한해 금수출량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금생산량보다 훨씬 많 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0여만원에 해당한 금, 은량은 세관을 거쳐 공개적으로 류출된 금, 은량이 고 세관의 승인없이 개인들이 가져간 사금과 귀금속사치품의 량이 그의 2~3배에 달하 였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침략자들이 불과 4년동안에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 로 우리 나라의 금, 은을 략탈해갔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조선으로부터 금, 은이 대량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1882년부터는 일본의 정화감소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조선에서 금, 은의 반출이 높아짐에 따라 1880년대부 터 일본경제는 정화위기의 고비를 넘어 금보유액이 해마다 늘어났으며 일본자본주의는 급속한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금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금의 고갈파 국가재정의 파 탄을 막고 자본주의적발전을 다그치는데서 큰 역할을 한것으로 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조 선에서 더 많은 금을 략탈하려고 날뛰였다.

그 목적은 둘째로, 조선에서 금팡리권을 독점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침략세력들에 앞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예속을 실현하자는데 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1870년대초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세력이 출현하고 그들 에 의해 광업부문에서 근대적경영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나갔다.

개화운동가들은 《회사설》, 《치도략론》 등의 글을 집필하여 광산개발의 필요성과 우 월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한편 봉건정부로 하여금 광산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오늘의 세계정세는 변화하여 … 금, 은, 석탄, 철 등 의 개발, 각종 기계들의 발명으로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를 주는 허다한 사실들은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다.》고 한 김옥균의 발언내용,\* 관서, 령남지방의 여러곳에 있는 금, 은 산지를 통리기무아문에 소속시켜 그 경영을 승인해준데 대한 이 기관의 관리 김병헌의 상소, 세계 각국에 정부사절단을 보내여 실정을 파악하고 새 기술을 습득해오도록 할데 대한 고영문의 상소 등은 당시 광산개발문제가 봉건정부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론의되고 있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 \* 《한성순보》 1884년 윤5월 11일

우리 나라에서 광산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던 당시의 형편은 조선에 대한 광물략탈로 저들의 재정적위기를 타개해보려던 일본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큰 난문제가 아 닐수 없었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강화되면서 청국상인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상업조건이 보장된 반면에 조선에서 일본의 사금독점체제는 점차 뒤흔들리기 시 작하였다. 그리고 조선광산채굴에 대한 유미렬강의 관심이 높아진것 역시 일본의 조선산 금확보에 하나의 장애가 아닐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882년 6월 9일(양력 7월 23일) 조선에서 대규모의 군인폭동이일어났다.

임오군인폭동은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침략책동과 사대매국적인 명성황후일파를 반대 하여 애국적군인들이 벌린 반침략반봉건투쟁이였다.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차있던 폭동자들은 일본공사관을 겹겹이 포위하고 반일,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공사 하나부사를 비롯한 관원들은 폭동군중의 투쟁에 겁을 먹고 스스로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도망쳤다.

하나부사로부터 군인폭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일본침략자들은 이것을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였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일본침략자들은 임오군인폭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 《거류민보호》를 위하여 공사 하나부사를 일본전권대표로, 그들에 대한 《호위》와 현지조사를 위하여 륙해군을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

일본대리공사 하나부사는 《제물포조약》 1차토의때 군인폭동에 의하여 일본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실로 광산채굴권, 전신가설권의 양도를 요구해나섰다.

이처럼 일본반동정부는 임오군인폭동을 구실로 《제물포조약》에서 조선봉건정부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다른 침략세력들에 앞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저들의 정치경제적예속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 2. 2.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금광리권강탈책동의 시점 및 단계

우리 나라의 금광리권을 강탈하기 위한 일본침략자들의 책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1880년대초 단천금광리권강탈로부터 시작되였는데 이것을 그 책동의 첫단계로 볼수 있다.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 금광에 대한 저들의 략탈적야욕을 드러낸것은 이미 1879년 부터였다.

1879년 우리 나라에 또다시 기여든 하나부사는 조선봉건정부에 원산을 개항할것을 강박하였다. 그리고 그 전해에 우리 나라가 부산세관에서 일본상품에 관세를 붙인것으로 하여 저들이 입은 《손해배상》의 대가로 일본인들에게 광산채굴권을 허가하고 일본공사와 령사. 그 수행원. 고용인들이 조선의 내륙지방의 각곳을 돌아보는것을 승인해줄것을 요 구하였다.

하지만 조선봉건정부의 거절로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일본반동정부는 1879년 7월에 원산개항을 내용으로 한 《원산진개항예약》을 강요하고 미국인광산학자인 코완을 초청하여 부산으로부터 원산에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지질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리고 1880년 3월부터는 원산항이 개항된것을 계기로 원산에서 일본인들이 자유로이 다 닐수 있는 거리를 사방 10리로 해놓았다.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금광리권강탈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 여 제일먼저 단천금광리권강탈에 달라붙었다.

임오군인폭동때 입은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구실밑에 일본외무경 이노우에 는 정부의 사촉밑에 하나부사에게 《사벼처리에 관한 재훈령의 건》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단천금광리권과 관련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이 중요하게 언급되여있었다.

이노우에가 하나부사에게 내놓은 단친금광리권과 관련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인관리를 파견하여 사금도태(淘汰-사금을 골라서 정선하는것)공업을 감독하게 할것.

둘째로, 도태법은 유미렬강의 가장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것.

셋째로, 매일 얻는 순리익가운데서 8/10을 배상금으로 돌리고 채굴비용은 조선봉건 정부가 부담할것.

넷째로. 금의 량을 장부에 기록하고 두 나라 정부관리의 립회밑에 검사하여 봉인한 다음 창고에 저장할것.

다섯째로, 사금도태사업에 관해서는 매일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포할것.

여섯째로, 배상금지불이 끝날 때까지 단천사금장의 일정한 구역을 외국인에게 허용 하지 말것.

배상금지불에 있어서 만약 단천의 사금만으로 모자랄 때에는 다른 사금장으로 대치 하며 그래도 모자랄 때에는 은, 동, 철, 석, 연의 채굴에 의하여 보충하다.

이노우에는 우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하나부사에게 금, 은, 동의 화폐를 조폐하며 한성, 부사, 원사, 인천 등지에 전선을 가설할데 대해서와 양화진, 대구, 단천, 합흥, 덕 원, 안변 등지를 개항할것 등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 \* 《일본외교문서》(일문) 15권 235폐지

우의 자료들은 일본침략자들이 임오군인폭동을 좋은 구실로 삼아 종래의 개항장을 통한 사금략탈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독점적채굴권을 탈취하려고 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그리면 일본침략자들이 왜 조선의 많은 사금장가운데서 단천금광리권을 획득하려고 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시 원산항에 집결된 사금가운데서 제일 품질이 좋은 사금 이 단천산 사금이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때문이였다. 원산항에 집결한 사금은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채굴된것으로서 그중에서도 단천산 사금은 북부조선일대에서도 가장 품질이 높은것으로 유명하였다.

이로부터 이노우에는 하나부사가 조선으로 건너오기 전에 벌써 단천금광의 채굴권을 강탈할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어 단천금광리권강탈을 위한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에 내정간 섭이라는것이 보이지 않게 별지로 첨부할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 \* 《일본외교문서》(일문) 15권 239폐지

이것은 일본이 아직까지 청나라세력을 조선에서 밀어내지 못한 당시의 조건에서 금 광리권문제가 청일 두 나라 관계를 악화시킬수 있다는것을 고려한데로부터 출발한것이 였다.

일본외무경 이노우에의 지령에 따라 하나부사는 조선봉건정부측 대표인 김홍집에게 55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광산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력설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조선봉건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원래 액수에서 10만원을 감액하는 조건에서 광산담보설정권, 전신가설권 및 함흥, 대구의 행상리권 등을 일본측에 양여한다는것을 조약에 명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반동정부의 이 강도적요구는 매해 10만원씩 절약하면 능히 배상금을 물수 있다는 김홍집의 제안에 의해 거절당하고말았다.

그후 1882년 9월 조선봉건정부가 김옥균, 박영효 등 11명의 수신사들을 일본에 파견한적이 있었다. 이때 일본반동정부는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17만원의 차관을 요꼬하마은행을 통하여 조선봉건정부에 제공하는 대가로 단천금광리권을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요꼬하마은행에서 파견된 일본인이 조선봉건정부의 관리와 협동하여 단천금광을 개설하며 여기에 드는 일체 비용을 조선봉건정부가 담당할것 그리고 채집한 금괴 혹은 사금을 요꼬하마은행에 보낼데 대해서와 단천지역에서의 금광채굴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말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인 단천금광리권강탈책동은 실제적인 채굴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의 금광리권강탈목적달성을 위해 그 이후에도 보다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1880년대 중엽이후에 들어와 《합영》, 《합자》의 간판밑에 일본민간인 및 회사들을 내세워 여러 금광리권을 강탈하는 방법으로 본격화되 였으며 이것을 그 책동의 둘째 단계로 볼수 있다.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단천금광리권을 강탈해내려던 일본침 략자들의 책동은 실패하고말았다.

하지만 일본침략자들은 오히려 단천금광 하나의 리권강탈이라는 소극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부산, 원산 등 개항장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흥금광, 창원금광 등 금매장 량이 풍부한 여러 금광리권강탈에 달라붙었다.

일본외무경 이노우에는 단천금광리권강탈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1886년 10월 4일 한성주재 림시대리공사 다까히라에게 비밀훈령을 보내였다. 훈령은 한마디로 말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의 광산전반에 대한 독점적채굴권을 탈취하라는것이였다.

7개 항으로 된 이노우에의 비밀훈령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조선봉건정부가 일본인에게 50년이상의 기한부로 광산채굴의 권한을 주도록 교섭할것, 둘째로, 조선봉건정부는 일정한 조세를 받는 조건에서 일본광산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국유지 또는 민유지를 대부해주고 일본인의 채광업을 보호하며 이를 방해하는자들을 단속하게 할것, 셋째로, 일본정부가 상당한 수의 일본인광산기사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광산개발에 유리한

장소를 탐사할수 있게 할것을 조선봉건정부와 교섭할것 등이였다.\*

### \* 《일본외교문서》(일문) 20권 236~237폐지

이 훈령은 모든 조항들이 다 일본인이나 일본회사가 조선에서 독점적인 광산채굴권 을 소유하기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여있었다.

우의 자료는 일본반동정부가 1886년에 벌써 우리 나라의 광산리권을 독점할 면밀한 계획을 작성하고 강행적으로 내밀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공사 다까히라는 본국의 비밀지령에 따라 우리 나라 광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 사에 달라붙었다.

다까히라는 우선 《일본국 공사, 령사 및 그 수행원이 조선국내를 답사하는것을 허가 한다.》는 규정을 내휘두르며 우리 나라 내륙지방의 금광 등 여러 광산들에 대한 조사를 맹렬히 진행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금광을 독점하려던 일본침략자들의 탐욕적행위 는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파탄되고말았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나라의 근대화의 절박성을 그 누구보 다도 뼈저리게 절감한 혁신관료들에 의해 개혁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었다.

혁신관료들은 외래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민족산업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러나갔다. 조선봉건정부내에는 광산개발 및 경영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광무국이 설치 되고 광산우영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자들을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작성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조선에서의 광산독점기도는 실 현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의 형편에서 일본침략자들은 《배상금》을 턱대고 광산리권을 강탈해내려던 초기 의 계획을 바꾸어 《두 나라의 공동경영》이라는 보다 교활한 술책에 매달리게 되였다.

《두 나라의 공동경영》안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민간인 및 회사들을 내세워 조선 사람의 이름을 빌려 광산채굴권을 얻게 한 다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투하하여 광산개 발을 진행하되 거기서 나오는 리득금을 자본의 투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매우 교 활하고 기만적인 략탈안이였다.

《두 나라의 공동경영》안은 1887년 4월에 일본외무경 이노우에가 조선인 또는 조선 봉건정부와 일본인사이에 자본을 합자하여 공동경영식으로 광산을 개발하며 그 분배를 자본투자액에 따라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것을 발단으로 하여 더욱 구체화되였다.

이노우에가 제기한 《합영》, 《합자》의 간판을 내건 광산개발안은 일본정부가 조선에 서 저들의 광산채굴을 통리기무아문의 정식승인을 받아내여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며 점 차 광산채굴리권을 완전히 독점하자는데 그 진목적이 있었다.

당시 이노우에는 조선봉건정부의 형편으로서는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기술 자도 제대로 댈수 없으며 따라서 외국의 자본 및 기술자고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것 을 면밀히 타산하였다. 이것은 이노우에가 한성주재 일본공사에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에서 초래될수 있는 여러가지 난점들을 피하면서 조선에 체류한 일본인가운데서 신용을 얻은자를 선정하여 조선봉건정부 또는 개인회사들과 계약을 맺도록 하라는 비밀지령을 보낸 사실이 잘 실증해준다.\*

### \*《일본외교문서》(일문) 20권 236~237폐지

광산리권강탈을 노린 《합영》,《합자》라는 일본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부산, 원산주재 령사들에게도 전달되였고 그 이후 일본자본가들이 조선으로 물밀듯이 쓸어들어왔다.

이처럼 1880년대 중엽이후에 들어서면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단천 금광이라는 한개 광산만의 리권강탈을 위한 조약체결강요의 범위에서 벗어나 개항장들에 서 가깝고 또 품질이 높은 영흥금광과 창원금광 등 여러 금광채굴권강탈에로 확대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영흥금광채굴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함경도 영흥금광은 18세기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금광산으로서 이 금 광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원산개항(1880년 3월)초기에 매우 높아졌다.

원산항의 개항을 계기로 일본의 제1은행이 원산에 지점을 설치한데 이어 약 20개에 달하는 일본인경영상사들이 련이어 이곳에 지점을 두었다. 이 회사들을 통해 원산항에서 많은 금이 류출되였는데 조선산 금수출액은 수출품의 8/10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원산부근에서 사금수출이 제일 많았던 금광은 장연, 영흥 등이였다. 특히 함경도지역의 금광에 대한 관심은 일본만이 아니라 청국도 례외로 되지 않았고 실지 1884년 5월이후 청국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청일량국상인들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졌다. 결국 일본침략자들은 청국에 선손을 빼앗길새라 영흥금광채굴권확보에 본격적인 관심을 돌리고 강행적으로 추진시켰던것이다.

당시 영흥금광형편을 본다면 1885년 광산의 감독관인 현두성과 유력자인 렴지호라는 두 민간인이 통리기무아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채굴 및 수세권을 장악하고있는 사설 광산이였다. 그후 북청부사 리용익이 영흥에 파견되여 영흥금광의 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원산항의 무역총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채굴량을 늘여나갔다.

영흥금광의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일본외무경 이노우에는 한성주재일본공사를 사촉하여 타국인이 손을 대기 전에 광산채굴권을 획득할데 대한 훈령을 내렸다. 그리고 1887년에 일본인광산기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영흥금광의 8개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선국 함경도 영흥지방 금갱의 실황》이라는 보고서와광물견본이 일본외무성에 발송되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본인거류민들을 부추겨 조선봉건정부 및 회사, 개인들과 약조를 맺는 방법으로 광산채굴권을 획득하기 위한 책동에미쳐날뛰였다.

영흥금광리권을 강탈해내기 위한 일본침략자들의 책동은 이 지방관료들의 봉건적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부사 리용익의 파면, 그로 인한 채굴작업의 중단 등의원인으로 파탄되고말았다.

일본침략자들은 또한 경상도에 있는 창원금광의 리권을 강탈하기 위해서도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창원금광은 《광석의 품질이 좋아 광석 1t을 캐내면 그가운데서 평균 금과 은 600원의 가치를 생산할수 있어 매일 2t의 광석을 캐낸다면 한달에 3만 6 000원, 적어도 3만원의 금을 얻어낼수 있다.》고 하였다.\*

#### \*《일본외교문서》(일문) 24권 304폐지

창원금광은 182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광산합영회사인 의신회사의 사원 박인룡, 방흥완, 최명완 등이 1885년 통리기무아문에서 채굴권을 허가받은 이후 그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였다. 그러나 채굴과정에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면서 의신회사는 경영위기에 직면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를 좋은 기회로 삼고 일본인자본가 우마끼 겐조를 의신회사에 침투 시켜 경상도 창원군의 룡택금광채굴권허가를 받아내도록 부추겼다. 우마끼는 형식상으로는 의신회사에 고용된것으로 되여있었으나 채굴에 필요한 자금과 의신회사에 납부할 특허료, 의신회사가 통리기무아문에 납부하게 되여있는 세금까지 다 부담하게 되여있은것으로 하 여 실제상으로는 창원금광채굴권을 독점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창원금광에서 채굴된 광석품질을 시험한 결과 고품위광석에 해당하며 앞으로 부산항 에서의 금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결론을 찾은 일본반동정부는 농상무성 광산국 장을 비밀리에 창원지역에 파견하였다. 부산령사의 소개로 우마끼를 만나 그의 고용인의 명목으로 창원금광에 대한 시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광산국장의 보고에 기초하여 일본 반동정부는 이 금광에서의 우마끼의 채굴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우마끼는 통리기무아문이 의신회사에 10년간의 채굴허가를 준 기회를 리용하여 1887년 5월에 창원금광채굴에 관한 《약증서》(《제1차 창원개광약단》이라고도 함.)를 맺 으려고 시도하였다. 13개 조로 된 이 약증서에는 의신회사가 우마끼를 간사로 리용하여 그에게 10년간 창원부내 금동광산의 채굴을 위임한다는것과 그 대가로 우마끼가 채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리익의 1/10을 의신회사에 납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여있었다.\*

### \* 《일본외교문서》(일문) 20권 244폐지

통리기무아문에 제출된 《창원개광약단》은 독판 김윤식 등의 반대로 거절당하였으나 그후 재정난으로 허덕이던 조선봉건정부의 우유부단성으로 하여 다시 상정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채굴권의 위임기한을 15~20년으로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의신회사 의 반대로 10년으로 확정되였다.

일본정부가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한 8개 조로 된 《약조기》(《제2차 창원개광약단》이 라고도 함.)체결은 청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하고말았다.

그후 1888년 1월 우마끼와 조선봉건정부사이에 선금 2만원을 먼저 납부하는 대가로 20년간의 창원금광채굴권을 허가해주며 광무국에 납부하는 순리익의 3/10가운데서 매해 천원씩을 20년간 갚는다는 내용의 《제3차 창원개광약단》이 합의되였으나 역시 청나라의 방해로 체결되지 못하였다.\*

### \* 《일본외교문서》(일문) 21권 228~229폐지

일본침략자들은 세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891년에 들어와 또다시 일본공사관을 사촉하여 밀양부사 정병하와 광무국 총판 한규로 등과 창원금광채굴권을 장악하기 위한 외교교섭을 벌렸다. 그리하여 1891년 10월 28일 우마끼와 의신회사, 광무국이 모여앉아 《제4차 창원개광약단》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는 의신회사에 고용된 우마끼를 10년간 해임하지 않고 특별히 보호해준다 는것과 광산개발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는것. 채굴지구는 광무국이 정하는 창원내 룡택 지역으로 한다는것, 조선인을 광부로 고용하며 개발에 필요한 기계와 자금은 우마끼가 부담한다는것, 개광전에 내는 선금을 만원으로 하며 세금은 년간 사금 300량으로 한다는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여있었다.

4차례에 걸쳐 체결된 《창원개광약단》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창원금광채굴의 일 본측 담당자는 우마끼 겐조로 되여있었으나 실지 처음에 채굴에 착수한 첫 사람은 후루 가와(古河)재벌이였다.

후루가와는 창원금광채굴을 조선의 광산진출의 첫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간주하고 우마끼의 창원지구의 룡택금광개발에 대한 청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지에 일본인 기사가 파견되고 창원지구의 7개 갱구에서 사용하게 될 광산용폭약문제가 토의되였으며 일본외무성과 내무성, 경시성사이에 충분한 합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창원금광채굴을 위해 한달에 3 000원의 자금을 투자하면 500원정도의 순리익 을 볼수 있다는 타산밑에 시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수입이 100원에 불 과한데다가 앞으로 창원에서 좋은 품질의 금광을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타산하자 1892년 12월에 와서 철수하고말았다.

창원금광에 대한 채굴은 그후 우마끼에 의해 1894년 4월부터 다시 진행되였으나 갑 오농민전쟁의 발발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의 앙양으로 본격적인 채굴에 이르지 못한채 중지되고말았다. 실지 창원의 룡택금광에 건설되였던 건물과 기계 는 물론 거의 모든 시설들이 전부 반일의병부대들의 공격을 받아 파괴됨으로써 일본침략 자들의 창원금광획득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하지만 일본침략자들은 그후에도 집요하게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가며 우리 나라 의 여러 금팡리권강탈을 위해 미쳐날뛰였다.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1890년대 중엽이후에 들어와 유미렬강들이 차 지하고있던 금광들까지 포함하여 우리 나라의 금광전반을 독점하기 위한데로 집중되였는 데 이것을 셋째 단계로 볼수 있다.

1890년대로 말하면 우리 나라를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침략책 동이 본격화된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

일본침략자들은 갑오농민전쟁을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밀어내고 독점적지배권을 확 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결국 1894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기간에 1만 2 000여명에 달하는 침략군이 우리 나라로 물밀듯이 쓸어들었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청나라세력을 조선에서 밀어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한편 일본침략 자들은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등 우리 나라의 반일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세력 및 운동 들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1896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금광전반에 대한 리권독점에 달라붙었다.

사대에 물젖은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유미렬강들의 강압에 굴복하여 1896년에는 미국에 운산금광리권을, 1898년에는 도이췰란드에 당현금광리권을 넘겨주는 매국배족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미 조선에서 일부 광산들의 리권을 차지한 유미렬강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그들의 리권을 《이양》받거나 조선봉건왕조로부터 광산리권을 빼앗는 방법으로 금광들을 략탈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1899년 12월 1일 일본공사 하야시를 내세워 조선봉건정부에 황해도 의 장연금광과 경기도의 안성금광 그리고 충청남도의 직산금광에 대한 리권을 넘겨줄것 을 강박하였다. 그런데 이 금광들은 다 궁내부소속으로서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허락하기 힘든 요구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시부자와 등 자본가들을 내세워 어떻게 하나 금광리권을 빼앗아내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직사금광은 1899년에 이미 후꾸지라는 일본인이 와서 조선인금광업자를 매수하여 채굴하고있는 광산이였다. 친일파인 최광순을 앞잡이로 내세워 채굴지를 넓혀나가던 후 꾸지는 조선봉건정부가 금광리권양도를 단호히 거절하자 《선채굴강행. 후특허권요구》라 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저들의 략탈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유미렬강들에게는 금광리권을 넘겨주면서 일본인에게만 허용해주지 않는것은 불평등하다고 강짜를 부렸다. 그리면서 기어이 직사금광리권을 빼앗아내려고 책동하였다.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일본도 역시 한성-인천사이 그리고 한성-부산사이 철도리권 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리익분배에서 균등하다고 하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태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번져지자 일본침략자들은 1899년 8월 일본인자본가 시부 자와를 내세워 친일파인 최광순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직산군 보덕원에 있는 금광채굴권 을 빼앗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직산군 보덕원에 있는 금광은 운산금광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전국에 있는 금광가운데서도 품위가 매우 좋은 곳인데다가 이 지방옆에 한성-부산 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캐낸 광석을 략탈해가는데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일본공사 하야시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이 앙양되면서 광산경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저들의 정부에 군함을 조선에 파견해주어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해줄것을 요구하기까 지 하였다. 결국 1900년 7월에 일본침략자들은 끝끝내 무력까지 동반하여 직산금광리권 을 25년기한으로 강탈해내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1870년대 중엽이후부터 계획화되고 1882년부터 실천단계에 들어갔으며 1880년대 중엽이후부터 1890년대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교활성과 악랄성을 띠고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 2. 3. 조선에서 감행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의 침략적본질

19세기말에 감행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 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빼앗아 저들의 치부욕을 충족하자는 략탈적성격과 함께 보다 중 요하게는 조선을 일본의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만들자는 침략적성격을 동반한 침략행위 라는것이다.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발전을 저애하였고 국가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외래침략자들에게 예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1885-1893년기간에 원산항을 통하여 일본에 수출된 급덩어리량은 491만 8 000원, 1885-1892년까지 조선에서 사금반출량은 730만 6 000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세관을 거치지 않고 가져간 금량은 앞서 언급한 량의 2배이상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침략자 들의 략탈적성격을 뚜렷이 실증해주는것이다.

### \* 《조선통상사정》(일문) 40페지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광물들은 일본의 자본주의발전을 추 동하고 침략전쟁준비를 갖추는데 탕진되였다.

# 3. 결 론

19세기말에 감행된 일본침략자들의 금광리권강탈책동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원료원 천지, 자본수출지로 전변시키는 략탈행위,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가들을 파산몰락시켜 자 본주의적관계의 정상적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 락시키는 침략행위였다.

1870년대 중엽 《운양》호사건의 도발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들 이민 때로부터 지난 140여년간의 력사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무 참히 유린한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 조선에서 감행하 저들의 온갖 략탈만행. 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지금 이 시각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할수도 없 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높은 반제계급의식을 가지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철 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실마리어 금팡리권, 운산금광, 창원금광